III. 인터넷매체의 유형에 따른 조정중재제도

1. 인터넷신문에 관한 조정중재

인터넷신문은 지난 2005년 언론조정중재제도를 독립적으로 규율하는 언론중재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이미 언론조정중재의 대상으로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6] 다만 2005년 제정된 언론중재법에 의하면, 오프라인 상에서는 기사 제공 서비스를 하지 않고 인터넷 상에서만 기사를 제공하는 순수한 인터넷신문기사에 대해서만 언론조정중재가 가능했다. 그래서 언론사닷컴이나 인터넷포털과 같은 인터넷뉴스서비스와 IPTV(Internet Protocol TV), 즉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 따른 언론피해는 언론조정중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었다.

언론중재법 제2조 제10호는 '인터넷신문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을 말한다'라고만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은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을 가리키며,[7] 이 신문법상의 인터넷신문이 되려면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한편, 신문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i)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① 취재 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

6) 2005년 제정 당시의 언론중재법 제2조 제1호는 "'언론"이라 함은 방송·정기간행물·뉴스통신·인터넷신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7) 신문법(당시 명칭은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이었다)상 '인터넷신문'이 처음 규율된 때도 2005년부터이다.

용하고, ②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하여야 하며, (ii)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하여야 한다고 하는 요건을 가리킨다(신문법 시행령 제2조 참고).

인터넷신문은 말 그대로 지면(紙面)이 아닌 인터넷을 통하여 발행·배포되는 신문을 말한다. 국내의 대표적인 인터넷신문으로는 오마이뉴스(http://www.ohmynews.com/), 이데일리(http://www.edaily.co.kr/),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마이데일리(http://www.mydaily.co.kr/) 등을 들 수 있다.

2013년 언론조정사건에 관한 통계를 살펴보면 매체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에 따른 언론조정사건이 합계 1,130건(46.4%)으로 가장 많다(신문 522건(21.5%),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 369건(15.2%), 방송 288건(11.8%)의 순서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8] 인터넷신문의 조정청구건수는 2012년 945건 대비 185건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신문시장의 지속적인 외연확대, 인터넷신문을 통한 국민의 뉴스접촉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IPTV에 대한 조정중재

언론중재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언론이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그러므로 인터넷포털과 같은 인터넷뉴스서비스나 IPTV 등은 법률적으로 언론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처음 언론중재법이 제정된 2005년에는 인터넷신문만을 언론조정중재의 대상으로 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나 IPTV에 대하여는 아직 규율하지 아니하여 인터넷포털이나 언론사닷컴[9] 등의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제공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

8) 출처는 http://www.pac.or.kr(보도자료)이다.
9) 언론사닷컴은 기존의 오프라인매체가 인터넷을 통하여 뉴스서비스를 전달하는 전자간행물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조정중재를 통한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구제가 어려워 언론중재법에 따른 언론조정중재제도의 문제로 지적되었다. 결국, 2009년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도 언론조정중재의 대상에 포함되어 현재는 인터넷뉴스서비스(포털)에 관하여 많은 조정중재가 이루어지고 있다.

(1) 우선, 언론중재법 제2조 제18호는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역시 신문법 제2조 제5호도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개념을 언론중재법 제2조 제18호와 비슷하게 규율하고 있다. 즉,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법」에 따른 방송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하고,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언론중재법 시행령 제1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에 의하면 언론중재법 제2조 제18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제외되는 경우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

(국내의 대표적인 언론사닷컴으로는 예컨대 1995년 중앙일보가 국내 최초로 발간한 조인스닷컴(http://joins.com), 조선일보의 조선닷컴(http://www.chosun.com), 한국일보의 한국아이닷컴(http://www.hankooki.com), 동아일보의 동아닷컴(http://donga.com) 등이 있다)로서 종래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현재는 언론사닷컴도 인터넷신문으로 본다(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

닌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언론의 기사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媒介)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신문법 시행령 제3조(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 대상)에서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언론의 기사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媒介)하는 전자간행물을 인터넷서비스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므로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개인 등이 운영하는 개인블로그, 1인 미디어, 인터넷카페 등은 비록 언론의 기사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한다 하더라도 언론중재법 제2조 제18호가 정의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언론중재법 제2조 제18호가 정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대표적인 예는 포털이라고 할 수 있다. 본래 포털(portal)이란 사전적으로 "입구, 현관, 정문"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인터넷에서는 인터넷이용자가 인터넷을 시작하면서 거치게 되는 첫 관문, 즉 입구가 되는 사이트라는 뜻으로 수많은 사이트를 특정한 분류에 따라 정리해 놓고 그 주소를 링크시켜서 이용자가 원하는 곳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든 사이트를 이르는 말이다.[10] 포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원래는 검색기능이었으나 현재는 그 영역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전자메일, 홈쇼핑, 블로그나 카페 등 다양한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근래에는 포털이 뉴스서비스 분야에까지 진출하여 검색 엔진이나 포털사이트는 기존의 미디어뉴스를 그대로 혹은 편집하여 독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뉴스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존의 오프라인 상의 뉴스매체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전문적으로 뉴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신문이나 언론사닷컴 등의 뉴스서비스 제공을 앞지르고 있다.

2009년 언론조정중재의 대상이 되는 매체가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

10) 우리나라 포털의 대표적인 예로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이 있다.

로까지 확대된 이후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언론조정중재는 꾸준히 늘고 있다. 통계를 보면 2009년 181(16)건, 2010년 841(54)건, 2011년 510(99)건, 2012년 454(51)건, 2013년 369(72)건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괄호 안은 중재신청사건이다).

(2) 2009년 개정 언론중재법에 의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도 언론조정중재의 대상에 포함된다. 언론중재법 제2조 제20호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등(자가 소유 또는 임차 여부를 불문하고, 「전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는 서비스에 사용되는 전기통신회선설비는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일정한 서비스품질이 보장되는 가운데 텔레비전 수상기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데이터·영상·음성·음향 및 전자상거래 등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은 보통 IPTV(Internet Protocol TV)라고 부르며, 초고속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영화나 방송프로그램 등 동영상 콘텐츠와 인터넷검색 등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콘텐츠를 TV수상기로 제공하는 양방향 방송·통신·음향 서비스이다. IPTV를 통해서는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볼 수 있으므로 기존의 공중파 방송이나 케이블방송과는 다르다. IPTV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TV와 셋톱박스 또는 전용모뎀, 인터넷회선만 연결되어 있으면 되고 리모컨만으로 IPTV를 통

하여 TV프로그램의 시청은 물론, 인터넷검색이나 영화 감상, 홈쇼핑, 홈뱅킹, 온라인게임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는 아주 다양한 콘텐츠나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2009년부터 인터넷을 이용하여 TV방송이나 그 밖의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TV수상기를 통하여 이용하는 IPTV시대로 접어들었다. 그 이후 현재 KT(올레TV), SK브로드밴드(BTV), LG유플러스(U+TV)가 IPTV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통계로는 2013년 7월을 기준으로 국내의 IPTV 가입자 수가 77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나 2013년까지 IPTV로 인한 언론피해를 다룬 언론조정중재사건은 아직 전무하다.

IV. 인터넷매체로 인한 언론피해에 따른 구제

1. 침해의 유형

인터넷매체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언론피해는 다양하다. 언론중재법 제5조 제1항은 인터넷매체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肖像),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私的)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당한 경우에 언론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피해로는 대표적으로 명예훼손, 신용훼손, 초상권·성명권·음성권의 침해, 프라이버시의 침해, 재산상 손해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